#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의 안<br>번 호 | |
|---|---|

제출일자 : 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상위 법률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및 유료화장실 관리기준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 조항 삭제
-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비치 제공 삭제(안 제8조)
- 유료화장실 관리사항 중 편의용품 및 기타 유지·관리사항 삭제 (안 제1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다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〔기획감사실-8948(2017.9.28.)〕
라. 성별영향평가 분석 : 개선 사항 없음 〔주민복지과-54994(2017.10.12.)〕
마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 (예고기간 : 2017.10.16. ~ 2017.11.6.)

성주군 조례 제 호

#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를 삭제한다.
제17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8조(편의용품의 비치·제공) 공중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<br>1. 화장지(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)<br>2. 세정제<br>3. 방향제<br>4. 탈취제 및 소독약품 | <삭 제> |
| 제17조(준수사항)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| 제17조(준수사항) ----------. |
| 1.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·제공하여야 한다. | <삭 제> |
| 2.·3. (생 략) | 2.·3. (현행과 같음) |
| 4. 기타 화장실의 유지·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. | <삭 제> |